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20호 2024. 4. 25.(목요일)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4-61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 . . . . 1
- 하동군 고시 제2024-67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 . . . . 2
- 하동군 고시 제2024-69호 진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종합정비사업 토지세목조서 변경 및 정정고시 3
- 하동군 고시 제2024-70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 . . . . 12
- 하동군 고시 제2024-71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 . . . . 13
- 하동군 고시 제2024-72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 . . . . 14
- 하동군 고시 제2024-7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 . . . 15
- 하동군 고시 제2024-74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 . . . . 17
- 하동군 고시 제2024-79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 . . . . 18
- 하동군 고시 제2024-80호 「하동군 스토킹 예방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 . . . 19
- 하동군 고시 제2024-81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 . . . . 36
- 하동군 고시 제2024-82호 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37
- 하동군 고시 제2024-83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 . . . . 39

##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24-685호 하동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40
- 하동군 공고 제2024-703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45
- 하동군 공고 제2024-706호 하동군 공유차량 관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 53
- 하동군 공고 제2024-707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8

## 일 반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24-621호 공시송달공고 . . . . . 79
- 하동군 공고 제2024-631호 소하천 점·사용허가 공고 . . . . . 81
- 하동군 공고 제2024-660호 202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공고 . . . . . 82
- 하동군 공고 제2024-680호 기검사 관련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 . 83

회 담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2024 -61호

##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

하여 신설한 지적기준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 지구명 : 악양 상신지구, 적량 동촌지구, 고전 시목노화지구
- 점 수 : 지적도근점 182점
- 지적기준점의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 문 의 : 하동군청 민원과 055-880-2123

2024년 4월 12일

붙 임 지적기준점 성과 조서 1부.

하 동 군 수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6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4. 5.

하 동 군 수

1. 허가연월일 : 2024. 4. 5.
2. 점·사용의 목적 : 야영장 조성에 따른 우수 배수시설 설치
3.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749 / 6㎡
4. 점·사용의 기간 : 2024. 04. 05. ~ 2029. 04. 05.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전명희

하동군 고시 제 2024-69호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사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토지소유자		관계인		관리내 용	비 고
					공부상( m <sup>2</sup> )	편입(m <sup>2</sup> )		주 소	성 명	주 소			
1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91	구	4,136.0	4.0	국	농림축산식품부					
2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1-10	도	79.0	9.0	정덕복	-					
3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1-6	도	523.0	20.0	국	국토교통부					
4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17-2	도	129.0	33.0	장난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면 감평리					
5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18-2	도	1,223.0	188.0	국	하동군					
6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8-29	도	64.0	1.0	국	경상남도					
7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19-1	도	307.0	2.0	장난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면 감평리					
8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7-2	구	453.0	453.0	국	농림축산식품부					
9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7-1	도	1,008.0	182.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4-7	도	704.0	15.0	국	국토교통부					
11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6-3	도	1,901.0	12.0	국	국토교통부					
12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6-14	도	2,595.0	248.0	국	하동군					
13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6-55	구	409.0	8.0	국	하동군					
14		하동군	426-52	구	618.0	9.0	국	하동군					

15	하진진교리	426-51	답	1,136.0	22.0	정미리외4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460,122동1302호				
16	하진진교리	818-1	구	168.0	15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7	하진진교리	426-66	대	1,622.0	2.0	좋은공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531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근저당권	
18	하진진교리	818-5	차	238.0	3.0	좋은공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531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근저당권	
19	하진진교리	426-102	구	73.0	22.0	노영숙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628-1 금오빌라 나동201호				
20	하진진교리	426-150	구	34.0	34.0	국	하동군				
21	하진진교리	426-156	차	13.0	11.0	국	하동군				
22	하진진교리	426-103	차	502.0	12.0	좋은공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531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근저당권	
23	하진진교리	426-37	차	906.0	10.0	국	하동군				
24	하진진교리	426-151	구	527.0	393.0	국	하동군				
25	하진진교리	426-40	차	879.0	575.0	국	하동군				
26	하진진교리	426-43	답	598.0	1.0	이종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3길23,101동1801호	수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24	근저당권	
27	하진진교리	426-41	차	1,675.0	942.0	국	하동군				
28	하진진교리	426-1	도	4,134.0	70.0	국	하동군				
29	하진진교리	426-128	답	31.0	6.0	국	하동군				
30	하진진교리	816-1	천	63,679	85.0	국	국토교통부				

		진교리			.0								
31		하동군 진교리	426-133	답	123.0	15.0	국		하동군				
32		하동군 진교리	302-87	구	1,899. 0	8.0	국		하동군				
33		하동군 진교리	302-11	도	2,863. 0	62.0	국		국토교통부				
34		하동군 진교리	302-17	도	251.0	69.0	국		국토교통부				
35		하동군 진교리	817	도	2,441. 0	18.0	국		국토교통부				
36		하동군 진교리	122-5	도	6,459. 0	1,009. 0	국		하동군				
37		하동군 진교리	131	도	41,384 .0	11,501 .0	국		국토교통부				
38		하동군 진교리	130-7	도	2,063. 0	696.0	국		국토교통부				
39		하동군 진교리	123-27	도	3,477. 0	112.0	국		하동군				
40		하동군 진교리	123-50	대	495.0	26.0	정영란외2인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평돌담길 20-44				
41		하동군 진교리	123-51	대	535.0	52.0	정영란외2인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평돌담길 20-44				
42		하동군 진교리	123-31	도	55.0	12.0	국		경상남도				
43		하동군 진교리	122-1	도	618.0	316.0	국		국토교통부				
44		하동군 진교리	820-1	도	2,500. 0	527.0	국		국토교통부				
45		하동군 진교리	23	도	560.0	248.0	국		국토교통부				
46		하동군 진교리	125-1	잡	918.0	15.0	국		하동군				

47		하진진동교리	125-3	답	917.0	142.0	국	경상남도				
48	당초	하진진동교리	127-1	도	1,174.0	47.0	최연석	-				
	표기	하진진동교리	127-1	도	1,174.0	1,174.0	최연석					
49		하진진동교리	123-25	답	1,634.0	131.0	정정세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민다리길 67-1)				
50		하진진동교리	130-1	도	155.0	134.0	국	국토교통부				
51		하진진동교리	123-52	답	25.0	25.0	국	경상남도				
52		하진진동교리	126-4	답	63.0	63.0	국	경상남도				
53		하진진동교리	126-1	도	7.0	7.0	국	국토교통부				
54		하진진동교리	819-1	천	32,515.0	2,448.0	국	국토교통부				
55		하진진동교리	302-5	구	926.0	7.0	국	하동군				
56		하진진동교리	302-491	도	147.0	15.0	국	하동군				
57		하진진동교리	302-496	도	130.0	54.0	국	하동군				
58		하진진동교리	302-161	도	1,773.0	338.0	국	하동군				
59		하진진동교리	302-497	도	429.0	164.0	국	하동군				
60		하진진동교리	302-175	도	60.0	6.0	국	하동군				
61		하진진동교리	20-21	도	1,908.0	1,200.0	국	하동군				



62		하진진교리	20	임	1,014.0	24.0	빈명완	창원시 사파정동 상남2-1공구 4블럭 성원아파트 511동1003호(원이대로 774, 511동 1003호)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39	근저당권
63		하진진교리	302-174	대	1,052.0	47.0	서영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38,101동1102호	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2길17	근저당권
64		하진진교리	819-9	천	225.0	33.0	국	국토교통부			
65		하진진교리	302-477	답	69.0	19.0	서영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38,101동1102호	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2길17	근저당권
66		하진진교리	302-325	도	26.0	24.0	서영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38,101동1102호	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2길17	근저당권
67		하진진교리	302-445	도	57.0	39.0	국	경상남도			
68		하진진교리	302-447	도	228.0	3.0	국	경상남도			
69		하진진교리	302-164	구	592.0	88.0	국	하동군			
70		하진진교리	20-29	제	1,596.0	305.0	국	국토교통부			
71		하진진교리	20-31	구	61.0	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72		하진진교리	20-34	장	684.0	17.0	국	경상남도			
73		하진진교리	819-8	천	950.0	710.0	국	국토교통부			
74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863	구	18,569.0	56.0	국	국토교통부			
75		하진진고	863-4	구	661.0	387.0	국	국토교통부			
76		하진진고	3	대	17,812.0	130.0	미진종합건설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58	미진스위트빌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3	대지권
77	당	하동군	249-2	도	340.0	340.0	이주은,경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초	진교면 고흥리					남도	246-11(6440분의35)				
	변경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249-2	도	340.0	340.0	이주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246-11				35/6440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246-11				6405/6440
78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861	도	1,286.0	803.0	국	국토교통부				
79	당초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302-1	도	592.0	592.0	이주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246-11(6440분의35)				
	변경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302-1	도	592.0	592.0	이주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246-11				35/6440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246-11				6405/6440
80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301-1	도	4,053.0	2,446.0	국	국토교통부				
81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3-4	도	276.0	69.0	국	경상남도				
82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5-6	구	853.0	102.0	국	농림축산식품부				
83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302-6	답	30.0	30.0	국	하동군				
84	당초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6	답	227.0	114.0	하순임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38,103동601호				
	변경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6-12	답	110	110	하순임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38,103동601호				
85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307-2	도	50.0	9.0	장동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50,206호				
86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5	답	2.0	2.0	국	하동군				
87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307-4	도	790.0	169.0	국	국토교통부				
88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307-8	도	770.0	180.0	국	국토교통부				
89		하동군	303-1	도	5,991.0	3,071.0	국	국토교통부				

		진교면 고령리			0	0							
90	당초	하진교면 고령리	293-3	답	36.0	14.0	박유상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267					
	표적	하진교면 고령리	293-3	답	36.0	36.0	박유상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267					
91		하진교면 고령리	5-1	답	65.0	59.0	성명기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5-11					
92		하진교면 고령리	5-18	답	2.0	2.0	박유상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162					
93		하진교면 고령리	5-11	대	180.0	72.0	성진하외1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새별길54,109동806호					
94		하진교면 고령리	5-2	답	91.0	67.0	정광호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4-9	국	하동군,세무서	압류		
95		하진교면 고령리	5-3	답	139.0	54.0	정택자외2인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219-1					
96		하진교면 고령리	5-13	대	574.0	75.0	정택자외2인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219-1	한국타이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3	근저당 권		
97		하진교면 고령리	5-8	도	3,371. 0	1,440. 0	국	경상남도					
98		하진교면 고령리	5-4	답	873.0	163.0	류현수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76					
99		하진교면 고령리	7	답	2,137. 0	671.0	국	경상남도					
100		하진교면 고령리	7-1	답	214.0	35.0	국	경상남도					
101		하진교면 고령리	7-20	도	820.0	812.0	국	하동군					
102		하진교면 고령리	7-18	도	864.0	864.0	국	하동군					
103		하진교면 고령리	7-19	답	206.0	206.0	정남식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2					
104		하진교면 고령리	7-24	대	570.0	570.0	조상근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95					

		고룡리						(민다리안길58-29)				
	당초	하동군진교면고룡리	7-11	답	1,168.0	769.0	황금분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95				
105	변경	하동군진교면고룡리	7-11	답	405.0	405.0	황금분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96				
	변경	하동군진교면고룡리	7-31	답	763.0	763.0	황금분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97				
106		하동군진교면고룡리	244-6	도	3,970.0	2,352.0	국	국토교통부				
107		하동군진교면고룡리	7-12	도	452.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8		하동군진교면고룡리	863-7	구	737.0	111.0	국	국토교통부				
109	당초	하동군진교면고룡리	7-21	대	595.0	590.0	조상근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95				
	변경	하동군진교면고룡리	7-21	대	595.0	595.0	조상근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95				
110	당초	하동군진교면고룡리	7-23	대	325.0	239.0	조상근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95				
	변경	하동군진교면고룡리	7-23	대	325.0	325.0	조상근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95				
111	당초	하동군진교면고룡리	7-22	답	265.0	185.0	조상근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95				
	변경	하동군진교면고룡리	7-22	답	265.0	265.0	조상근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95				
112		하동군진교면고룡리	7-10	답	2,522.0	476.0	국	경상남도				
113		하동군진교면고룡리	7-2	답	328.0	197.0	국	경상남도				
114		하동군진교면고룡리	7-3	답	250.0	90.0	국	경상남도				
115		하동군진교면고룡리	7-4	도	117.0	3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6		고령리 하진교	7-5	구	450.0	4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7		고령리 하진교	7-6	답	990.0	98.0	국	경상남도				
118		고령리 하진교	7-9	도	84.0	84.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9		고령리 하진교	246-3	답	176.0	81.0	정정수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5				
120		고령리 하진교	248-2	천	142.0	37.0	국	국토교통부				
121		고령리 하진교	860	구	102,280.0	36.0	국	국토교통부				
122		고령리 하진교	303-2	도	149.0	149.0	김문기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776				
123	추가	하진교	425-7	답	2,244	2,244	김고산	경남 하동군 고전면 명교길 57				83/297
							김고산	고전면 명교리 45				2
												2889/2
												972
124	추가	하진교	425-8	답	524	524	박숙이	진주시 상대동 182-1				
125	추가	하진교	425-10	답	1,069	1,089	박경자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선창길 26-1				

#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 - 70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4. 9.

하 동 군 수

1. 허가연월일 : 2024. 4. 9.
2. 점·사용의 목적 :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관로공사)
3.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561-5번지 일원, 18,89㎡
4. 점·사용의 기간 : 2024. 4. 9. ~ 영구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 상하수도사업소장

#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 - 71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4. 11.

하 동 군 수

1. 허가연월일 : 2024. 4. 11.
2. 점·사용의 목적 : 식물재배(농업)
3.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1104-2, 397㎡
4. 점·사용의 기간 : 2024. 4. 11. ~ 2029. 4. 11.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정금옥

#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 - 72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4. 11.

하 동 군 수

1. 허가연월일 : 2024. 4. 11.
2. 점·사용의 목적 : 식물재배(농업)
3.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고전면 명교리 521-8, 300㎡
4. 점·사용의 기간 : 2024. 4. 11. ~ 2029. 4. 11.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이종태



하동군 고시 제2024 - 73호

#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2.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397-110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6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공설운동장로 417-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644-4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4.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건물번호 부여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1297-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397-110	20240412	옛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86-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강변길 55	20240412	관곡천이 흐르고 있으므로 강변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687-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966-51	2024041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620	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중기길25-69.	20240412	시루봉 남쪽에 있는 중기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황천리 266-9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황계길 121-1	20240412	황계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47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180-12	20240412	행정구역명(옥종+수곡면) 활용	

건물번호 변경(분할)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공설운동장로 417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공설운동장로 417-1	20240412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 공시설명을 반영	

건물번호폐지

업무구분	종전주소	효력발생일	이동사유	비고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644-4	20240412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 - 74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4. 15.

하 동 군 수

1. 허가연월일 : 2024. 4. 15.
2. 점·사용의 목적 : 현수막지정계시대 설치
3.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531-16, 6㎡
4. 점·사용의 기간 : 2024. 4. 15. ~ 2029. 4. 15.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청(도시과)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7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4. 17.

하 동 군 수

1. 허가연월일 : 2024. 4. 17.
2. 점·사용의 목적 : 식물재배
3.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1918-2(구) / 50㎡  
(인근 : 청암면 상이리 645-1)
4. 점·사용의 기간 : 2024. 04. 17. ~ 2029. 04. 17.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정복례

하동군 고시 제2024-80호

## 하동군 스토킹 예방 지침(안) 행정예고

「하동군 스토킹 예방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 하 동 군 수

1. 행정규칙명 : 하동군 스토킹 예방 지침

2. 제안 이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3.1.17 제정, '23.7.18 시행)에 의해 공공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목적 및 적용 범위, 정의(안 제1조~제3조)
- 스토킹 예방교육(안 제4조)
- 고충상담창구 및 업무 지원·고충 상담 처리(안 제5조~제7조)

-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및 조사, 조사결과 보고 등(안 제8조~제11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12조~제13조)
- 조사 등 결과 통지 및 징계(안 제14조~제15조)
- 재발방지조치 및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안 제16조~제17조)

#### 4. 의견 제출

- 이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하동군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 메일 등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가족정책과
  - 전화 : 055)880-2313, FAX : 055)880-2349
  - 이메일 : minpretty1@korea.kr

붙임 하동군 스톡킹 예방 지침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별지】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규칙명 : 하동군 스토킹 예방 지침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지침)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예규 제 호

## 하동군 스토킹 예방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 구성원 (군수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스토킹 예방교육)** ① 군수는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7. 기타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군수는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하동군 누리집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등)** ① 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 부서에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처리업무 담당자를 두고 소속 구성원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고충상담창구는 하동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충상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

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하동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 이를 겸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및 처리
3.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부서 간 협조·조정  
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스토킹 사건접수 및 처리대장,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군수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상급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마. 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3.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⑧ 군수는 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스토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받은 상급자(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군수는 고충상담원의 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고충 상담 및 처리)** ① 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토킹 피해 및 위협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제8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① 군수는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

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군수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등)** ①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

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스토킹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⑧ 고충상담원은 해당 사안이 성희롱·성폭력이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등과 복합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사안 처리 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조사결과보고)** 고충상담원은 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불리한 처우 금지 및 비밀유지)** ① 군수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군수는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피해사실을 이유로 또는 보호 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2차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 고충상담원 등 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사안 처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기존에 설치된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하동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5조에 따른 하동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군수가 스톡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군수가 스톡킹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스톡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스톡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등 결과 통지)** 군수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① 군수는 스톡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군수는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희롱·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스토킹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⑥ 군수는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제17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스토킹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

급기관으로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 칙

이 ~~자침은~~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 조사결과 및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1. 사안 개요

####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 2. 조사결과

- 조사내용 중 주요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 3.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 - 81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4. 22.

하 동 군 수

1. 허가연월일 : 2024. 4. 22.
2. 점·사용의 목적 : 식물재배
3.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고전면 명교리 573, 410㎡
4. 점·사용의 기간 : 2024. 4. 22. ~ 2029. 4. 22.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정갑채

하동군 고시 제2024 - 82호

### 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 하 동 군 수

####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변경)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내용

- 지정현황 -

지구명	위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화포지구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일원	침수 위험	가	192,541	• 화포지구는 진교배수장 우수지의 퇴적으로 우수지 용량이 부족하여 내수침수가 발생하며, 화포마을을 관류하는 화포안 골소하천은 전구간 제방고가 부족하여 소하천 월류피해가 발생하는 실정	

붙임 #1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화포지구)

#### 2.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2.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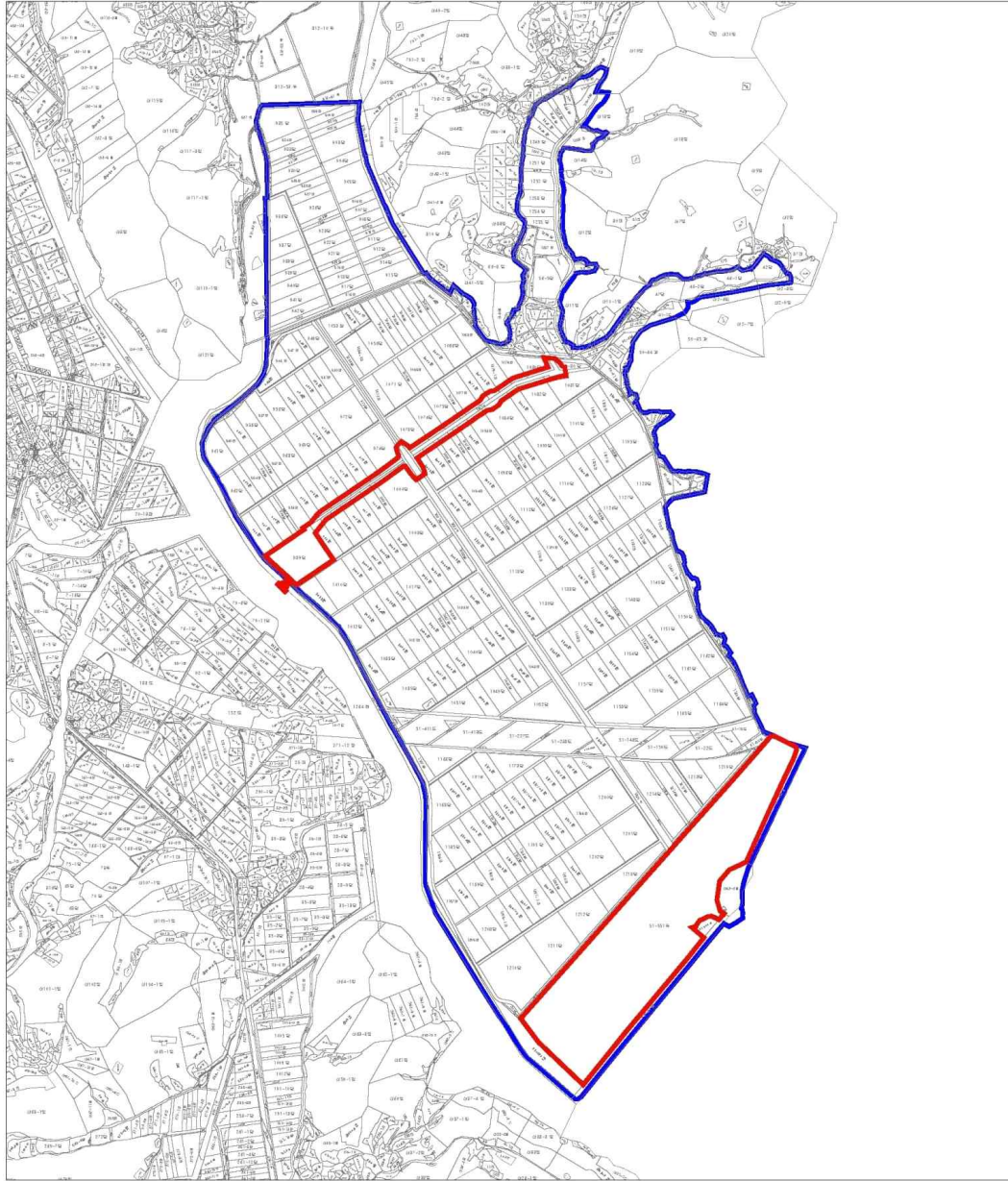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변경) 비치 : 하동군 건설교통과

나. 기타 의문 사항은 하동군 건설교통과(☎ 055) 880-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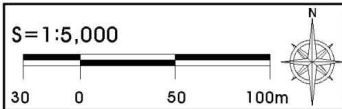
□붙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변경)

# 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

S=1:5,000



- 범 레 □
- 자연재해위험지구
- 지적선
- 침수예상구역



지정권자 : 경상남도 하동군수  
 지정일자 : 2024년 04월 00일  
 고시년도 : 2024년 04월 00일  
 고시번호 : 고시문 참조  
 작성년월일 : 2024년 04월 00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하동군수



#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 - 83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4. 23.

하 동 군 수

1. 허가연월일 : 2024. 4. 23.
2. 점·사용의 목적 : 잔너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반조사
3.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고전면 대덕리 447-3, 10㎡  
하동군 고전면 대덕리 489-1, 10㎡  
하동군 고전면 덕천리 1484, 10㎡
4. 점·사용의 기간 : 2024. 4. 23. ~ 2024. 5. 13.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건설과)

하동군 공고 제2024-685호

## 하동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이장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이장정수조례
2. 제안 이유 : 금남면 노량리 구노량(舊露梁)마을의 본래 명칭은 노량(露梁)으로 일제강점기 행정 개편으로 구노량과 신노량으로 분리되었음.  
구노량(舊露梁)의 구(舊)자가 오래되고 묵은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기에 마을 주민 다수가 마을 명칭을 정통성을 가진 노량(露梁)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본래 명칭인 노량(露梁)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금남면 노량리 구노량(舊露梁)마을의 명칭을 노량(露梁)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5, FAX 055-880-2159, e-mail gun9@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조례 제 호

###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금남면 노량리 관할구역란 중 “구노량(舊露梁)”을 “노량(露梁)”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읍면별	리명	정원	관할구역	읍면별	리명	정원	관할구역
금남면 (金南面)	중평리 (仲坪)	2	중평(仲坪) 상촌(上村)	금남면 (金南面)	중평리 (仲坪)	2	중평(仲坪) 상촌(上村)
	대치리 (大峙)	1	대치(大峙)		대치리 (大峙)	1	대치(大峙)
	노량리 (露梁)	2	구노량(舊露梁) 신노량(新露梁)		노량리 (露梁)	2	노량(露梁) 신노량(新露梁)
	송문리 (松門)	4	미법(彌法) 수문(水門) 소송(小松) 신기(新基)		송문리 (松門)	4	미법(彌法) 수문(水門) 소송(小松) 신기(新基)
	대송리 (大松)	3	대송(大松) 사등(砂登) 덕오(德昨)		대송리 (大松)	3	대송(大松) 사등(砂登) 덕오(德昨)
	덕천리 (德川)	3	덕포(德浦) 상삼천(上三川) 하삼천(下三川)		덕천리 (德川)	3	덕포(德浦) 상삼천(上三川) 하삼천(下三川)
	진정리 (眞正)	3	금오(金午) 진정(眞正) 조금(助琴)		진정리 (眞正)	3	금오(金午) 진정(眞正) 조금(助琴)
	계천리 (鷄川)	3	사궁(射弓) 영천(永川) 계항(鷄項)		계천리 (鷄川)	3	사궁(射弓) 영천(永川) 계항(鷄項)
	대도리 (大島)	1	대도(大島)		대도리 (大島)	1	대도(大島)

하동군 공고 제703호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기부채납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개정(안 제16조)
  - 대부료의 요율 적용 대상 정비 (안 제27조)
  -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대상 정비 (안 제39조)
  -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변경(안 제62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하동군(참조 : 재정관리과, 전화 880-2304, FAX 880-2279, [blast1123@korea.kr](mailto:blast1123@korea.kr))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7호 중 “경작하고 있는 자”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u>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u></p>	<p>제16조(무상사용기간) ----- -----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u>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u></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u>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u></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③(현행과 같음) ④ ----- -----. 1. -----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u>」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u>농지법</u>」에 따른 농지로써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u>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u></p>	<p>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 1. ~ 6. (생략) 7.----- ----- <u>경작하고 있는 농업인</u>-----</p>



## 관 련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하동군 공고 제706호

##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제안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차량 내부 게시(안 제21조)
  - 차량 지도 점검 사항에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관리 규정 신설(안 제28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하동군(참조 : 재정관리과, 전화 880-2304, FAX 880-2279, blast1123@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집중관리부서는 공용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정기검사 실시 여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④ (생략)</p> <p>&lt;신 설&gt;</p>	<p>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u>집중관리부서는 공용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u></p>
<p>제28조(지도·점검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 3.(생략)</p> <p>&lt;신 설&gt;</p>	<p>제28조(지도·점검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3.(현행과 같음)</p> <p>4.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정기검사 실시 여부</p>

하동군 공고 제2024-707호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계 변경사항 반영, 만 나이 규정 정비, 상위법 제명 불부합사항 등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하동군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국가유산체계 변경사항 반영, 만 나이 계산 표시 규정 정비, 법령불부합 등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하동군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국가유산체계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명 및 문화재용어 정비 7건
  -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연령이 규정된 자치법규 정비 4건
  - 인용법령명 불부합 사항 정비 1건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하동군 기획행정국 기획예산  
과 법무지원담당 055-880-2973, FAX 055-880-2019,  
[ibche@korea.kr](mailto:ibche@korea.kr) 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제1조(「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문화재에 대한 감면)”을“(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 보호구역안”을 “문화유산보호구역안”으로 한다.

제2조(「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3조(「하동군 국가무형문화재 낙죽장 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국가무형문화재 낙죽장 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국가무형문화재 낙죽장 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하동군 국가무형유산 낙죽장 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조(「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하동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 「경상남도 국가유산보호 조례」”로, “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업무”를 “국가유산업무”로, 같은조 제6항 중 “문화재담당”을 “국가유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제3조 제목,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5조제2호, 제5조제3호, 제5조제4호, 제5조제5호, 제10조 제목,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제1호,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호, 제14조제2호,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향토문화유산”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5조(「하동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하동군 계획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제7조(「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안내시설물란 중 “공원/관광/문화재안내”를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로 한다.

제8조(「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6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9조(「하동군 하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하동군 하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6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10조(「하동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11조(「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신청대상란 중 “만20세”를 “20세”로 “만65세”를 “60세”로 한다.

제12조(「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구분란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 개정 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적용례)**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p>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 공예품</p> <p>12. · 13. (생 략)</p>	<p>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 품</p> <p>12. · 13. (현행과 같음)</p>
---	--

「하동군 국가무형문화재 낙죽장 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 국가무형문화재 낙죽장 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가무형 문화재</u>의 전통기술종목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하동군 <u>국가무형문화재 낙죽장 공방</u>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하동군 <u>국가무형문화재 낙죽장 공방</u> “(이하 ”공방”이라 한다)이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u>국가무형 문화재</u>의 전통기술종목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p> <p>제5조(운영) ① 군수는 공방을 직 접 운영하거나 <u>국가무형문화재</u></p>	<p><u>하동군 국가무형유산 낙죽장 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국가무형 유산</u>----- ----- <u>국가무형유산</u>----- ----- -----.</p> <p>제2조(정의) ----- <u>국가무형유산</u>----- ----- ----- <u>국가무형 유산</u>----- ----- -----.</p> <p>제5조(운영) ① ----- ----- <u>국가무형유산</u> ---</p>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또는 단체  
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동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  
는 제4조에 따른 공방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  
다.

② · ③ (생 략)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  
한 법률」 -----  
-----  
-----.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  
-----  
----- 무형유산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u>향 토문화유산</u>을 체계적으로 보존 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p>	<p><u>하동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u></p> <p>제1조(목적) ----- <u>향 토유산</u>----- ----- -----</p>

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하동군 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도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의 유산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 원칙)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

제2조(정의) ----- “향토유산”이란 -----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 「경상남도 국가유산보호 조례」----- 지정유산 -----  
-----  
-----  
-----.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유산-----  
-----  
-----.

제4조(위원회 설치) ----- 향토유산의 -----  
----- 향토유산 보호·관리위원회-----  
-----.

제5조(위원회 기능) -----  
-----.

1. ----- 향토유산 -----  
-----
2. ----- 향토유산 -----  
-----  
-----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국가·도지정문화재로의 지정 신청 사항

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문화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유·무형문화재를 소유하거나 보유한 사람

3. 4. (생략)

③ ~ ⑤ (생략)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 담당이 된다.

제10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①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을 하동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하 “소유자

3. 향토유산

4. 향토유산의 국가·도지정유산

5. ----- 향토유산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유산업무 -----

1. 국가유산

2. 문화·무형유산

3.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국가유산 -----.

제10조(향토유산의 지정) ① ---  
----- 향토유산을 하동군 향토유산-----  
-----  
----- 향토유산-----

등”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은 향토유형문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향토문화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1조(지정의 해제)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2. 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서

-----  
-----.

② 향토유산은 향토문화유산, 향토무형유산, 향토자연유산 -----  
-----.

③ 향토유산-----  
-----  
-----.

④ ----- 향토유산-----  
-----  
-----  
-----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정의 해제) ① -----  
----- 향토유산-----  
-----  
-----  
-----  
-----.

1. 향토유산이 국가·도지정유산 -----
2. ----- 향토유산



가치를 잃은 경우

3. 향토문화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4. (생략)

② (생략)

제12조(지정의 고시) ① 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 및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13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문화유산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소재지 읍·면장 또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별도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리자를 지정할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하동군향토문화유산 관리자 지정서를

3. 향토유산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정의 고시) ① 향토유산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에 향토유산관리자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

향토유산에 향토유산의 보호

③ 향토유산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 표지를 향토문화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점검·기록)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관리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등)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산-----

-----  
-----  
-----  
--.

1. ----- 향토유산  
-----  
-----.

2. ----- 향토유산의  
-----  
----- 향토유산 주변  
-----  
-----.

3. ----- 향토유산의  
-----  
----- 향토유산 보존  
-----  
--.

제15조(관리점검·기록) ① -----  
-- 향토유산-----

-----  
-----.

② ----- 향토유산-----  
-----  
-----  
-----.

제16조(경비보조 등) ① 향토유산  
-----

그 해당되는 소유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생략)

-----  
----- . ----- 향토유산 -----  
-----  
-----  
-----  
----- .

② (현행과 같음)

「하동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p> <p>1. ~ 4. (생략)</p> <p>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u>문화재</u> 등의 위치표시</p> <p>6. (생략)</p>	<p>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p> <p>-----</p> <p>-----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p> <p>-----</p> <p>-----</p> <p>----- <u>국가유산</u> -----</p> <p>-----</p> <p>6.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계획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생 략)</p> <p>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 퍼센트 이하</p> <p>가. (생 략)</p> <p>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p> <p>다. (생 략)</p> <p>3.·4. (생 략)</p> <p>③·④ (생 략)</p>	<p>제3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p> <p>다. (현행과 같음)</p> <p>3.·4.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제2조 및 13조 관련)</p> <p>1.</p>		<p>[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제15조 관련)</p> <p>1.</p>	
분 류	종 류	분 류	종 류
안내 시설 물	교통 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u>공원/관광/문화재 안내</u> ,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 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안내 시설 물	교통 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u>공원/관광/국가유산안내</u> ,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2.~6. 생략		2.~6. 생략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 중 자녀 모두가 <u>만 18세</u> 이하인 세대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u>18세</u>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하동군 하수도 급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9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와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다자녀 가정(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u>만 19세</u>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p> <p>4. 삭제</p> <p>5. 6. (생략)</p> <p>② (생략)</p>	<p>제29조(감면 등) ①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u>19세</u> -----</p> <p>5.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하동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편성기준) 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u>만 20세</u>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4조(편성기준) ① ----- ----- <u>20세</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px; text-align: center;">신</td> <td><input type="checkbox"/> 만20세이상 장애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td> <td><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td> <td><input type="checkbox"/> 만65세 이상 노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상</td> <td><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td> </tr> <tr> <td></td> <td><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td> </tr> <tr> <td></td> <td><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td> </tr> </table>	신	<input type="checkbox"/> 만20세이상 장애인	청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족	대	<input type="checkbox"/> 만65세 이상 노인	상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별지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px; text-align: center;">신</td> <td><input type="checkbox"/> 20세이상 장애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td> <td><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td> <td><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노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상</td> <td><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td> </tr> <tr> <td></td> <td><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td> </tr> <tr> <td></td> <td><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td> </tr> </table>	신	<input type="checkbox"/> 20세이상 장애인	청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족	대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노인	상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신	<input type="checkbox"/> 만20세이상 장애인																								
청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족																								
대	<input type="checkbox"/> 만65세 이상 노인																								
상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신	<input type="checkbox"/> 20세이상 장애인																								
청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족																								
대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노인																								
상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봉안당 사용료 등 납부기준 및 환급비율                      2. 상세사용료 등                      가. 대상별 사용료 등</p> <table border="1" data-bbox="233 672 793 931"> <thead> <tr> <th data-bbox="237 678 788 719">구 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37 723 788 82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td> </tr> <tr> <td data-bbox="237 828 788 929">「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td> </tr> </tbody> </table>	구 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p>[별표]                      봉안당 사용료 등 납부기준 및 환급비율                      2. 상세사용료 등                      가. 대상별 사용료 등</p> <table border="1" data-bbox="834 672 1394 958"> <thead> <tr> <th data-bbox="839 678 1390 719">구 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39 723 1390 85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td> </tr> <tr> <td data-bbox="839 857 1390 958">「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td> </tr> </tbody> </table>	구 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구 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구 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하동군 공고 제2024-621호

## 공 시 송 달 공 고

하동군에서 추진하는 「경전문화공유마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거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9일

##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하동 경전문화공유마을 조성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광평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4. 공시송달 사유 : 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우편 송달 불가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기간 : 2024. 4. 9.(화) ~ 2024. 4. 26.(금) [17일간]
7. 공고내용
  - 협의장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본관 1층 도시과
  - 협의기간 : 2024. 4. 9.(화) ~ 2024. 5. 10.(금) [31일간]
  -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따름
  - ※ 미 협의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진행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사본 1부, 인감증명서 2부, 토지대장 1부,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포함) 1부.
9. 기 타
  - 보상협의 요청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도시과(☎055-880-2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

토 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1	하동읍내리	1016	대	466	458	제*	경남 양산시 동면 금*16길 100, 30*동 1*01호	

##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24-631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하동군 상하수도사업소장		
	대표자 (성명)	하동군 상하수도 사업소장	주소	하동읍 신기공항길 298-23
소하천명		인곡천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570 일원		
	면적	0.33 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m <sup>2</sup>
	기간	2024. 04. 09. ~ 영구		
	목적 및 사유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관로설치)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 위치도

하동군 공고 제2024-660호

## 202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공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규정에 의거 202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공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하 동 군 수

1. 2024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현황 : 붙임참조
2. 공개일자 : 2024. 04. 15. ~ 2025. 04. 15.(12개월)
3. 문의처 : 하동군청 안전교통과 자연재난담당(☎055-880-2252 ~ 3)

붙임 2023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조서 1부. 끝.

하동군 공고 제2024 - 680호

# 공 고 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공고명칭 : 자동차 검사 안내 및 명령 과태료 처분 관련 우편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 2.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3. (15일간)
-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 4. 문 의 처 : 하동군 안전교통과(☎055-880-2399)
- 5. 공고사항

가. 자동차검사 경과안내 대상차량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자동차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따라 자동차운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고지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 77%까지 가산하여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압류예고통지를 받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 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4. 4. 18.

## 하 동 군 수

□ 사전안내장(3월)

순서	차량번호	소유자	우편번호	주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등기번호
1	91더4347	정*섭	5232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공설운동장로 1*	2024.03.08	수취인불명	일반
2	839도8038	이*부	52331	경남 하동군 하동읍 남당길 2*-2 2*2호 송림아트빌라	2024.03.08	이사감	일반
3	64보9876	노*정	5232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다로 2*0-14	2024.03.08	수취인불명	일반
4	27도1130	강*호	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신기공항길 1*8-2	2024.03.11	수취인불명	일반
5	13서4215	강*희	52352	경남 하동군 금남면 도길 1*1-7	2024.03.07	이사감	일반
6	98구1693	송*준	52302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9	2024.03.14	이사감	일반
7	27오0895	김*아	52355	경남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485 1*4동 4*3호 해양파크빌	2024.03.12	수취인부재	일반
8	21누4715	백*기	52302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9	2024.03.14	이사감	일반
9	82도3445	김*곤	52353	경남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90-*6	2024.03.05	이사감	일반
10	13서4490	서*석	52350	경남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2	2024.03.05	이사감	일반
11	88누0753	정*곤	52353	경남 하동군 금성면 명덕길 1*3-87	2024.03.05	수취인불명	일반
12	54우4066	김*교	52316	경남 하동군 북천면 우리길 3*-26	2024.03.05	수취인불명	일반
13	26두6578	김*철	52355	경남 하동군 금성면 나팔중앙길 3*-1	2024.03.05	수취인부재	일반
14	88모5677	이*걸	52314	경남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2*8-49	2024.03.06	수취인부재	일반

유효기간경과엽서(4월)

번호	자동차	소유자	우편번호	주 소	반송일	반송사유	등기번호
1	62구3406	박*진	52305	경남 하동군 악양면 증기길 8	2023.03.12	폐 문부재	10948-6129-1405
2	57로3621	김*민	52324	경남 하동군 하동읍 소재1길 9 나동 3*2 호 무지개맨션	2023.03.13	폐 문부재	10948-6129-1404
3	86어2744	하*호	52314	경남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로 7*4	2023.03.12	반송	10948-6129-1406

검사명령서(12월)

번호	자동차	소유자	우편번호	주 소	반송일	반송사유	등기번호
1	65노3783	김*식	52353	경남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1*8	2024.03.05	수취인불명	일반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번호	자동차	소유자	우편번호	주 소	반송일	반송사유	등기번호
1	90보9127	이*열	52332	경남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33, 2층	2024.03.13	폐 문부재	10948-6129-1414
2	16거3444	김*섭	52313	경남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90, 70호	2024.03.12	반송	10948-6129-1430
3	84우7949	강*준	52349	경남 하동군 진교면 남양안길 1*-9	2024.03.12	반송	10948-6129-1424
4	51고3865	박*화	52342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이신촌길 9-*	2024.03.12	반송	10948-6129-1417
5	51러0491	민*욱	52313	경남 하도군 옥종면 양구2길 *0	2024.03.12	반송	10948-6129-1421
6	20조1596	김*정	5232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0-14	2024.03.19	이사감	일반
7	96도8151	주식회사 하동*발	52340	경남 하동군 고전면 매자신방길 2*8	2024.03.18	이사감	일반
8	34고2073	하동읍자율방*대	52325	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3*	2024.03.19	이사감	일반